#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06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최민희·김남희·김용만

김윤덕 • 김준형 • 김현정

문진석 • 박민규 • 오세희

유동수 • 윤준병 • 이병진

이원택 • 이정헌 • 정성호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의 진입요건이 낮아 수많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이 제대로 규제되고 있지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및 제50조의9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7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5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9(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그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 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①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6조제1항제9호의3을 제9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보 전송의 위탁 등) <신 설> 보 전송의 위탁 등) ① 누구든 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 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① (생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③ 제2항-----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 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 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 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 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50조의9(과징금의 부과 등) ① <신 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 조의3,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 반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 은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 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

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⑦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 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 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 9의2. (생 략) <u><신 설></u>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 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 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 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 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 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76조(과태료) ①	
<u>.</u>	

2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
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u>9의3.</u> (생 략)

10.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전송을 위탁한 자

<u>9의4.</u> (현행 제9호의3과 같음)

10.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